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 사무 처리요령

건설기술관리법을 위반한 건설업체 또는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 사무 처리 요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회원사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게재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I. 제 재 사 무

1. 기본사항

□ 목 적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건설기술인력의 관리)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건설기술자의 신고), 제6조의3(건설기술자의 명의대여 금지 등) 등을 위반한 건설기술자 및 업체에 대해 동법 제42조의2에 의한 벌칙 및 제43조에 의한 과태료 처분과 동법 제6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등)에 의한 업무정지 처분 기준을 정하고 동법 시행령 제54조의8(감리원의 업무정지기준),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4(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기준)제2항 및 제40조의2(감리전문회사의 처분기준)에 의한 업무정지와 동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제4항에 의한 과태료부과 처분의 경감 또는 가중 기준을 정하여 행정처분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함

□ 제 재 대 상

- 가.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사항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건설관련업체(2005년 7월 1일 이전의 행위에 한한다)
- 나. 교육훈련 미이수 건설기술자 및 교육훈련 경비 미부담 업체(사용자)
- 다. 신고경력의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라.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
- 마.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게 한 건설기술자와 건설기술자의 성명을 사용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한 자
- 바. 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대여한 자와 대여받은 자
- 사. 이중 취업자(건설기술경력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대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아. 경력·학력·자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자
 -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마목 내지 아목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해당 법인 또는 개인

□ 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동법 제6조의2에 의한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는 제외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의4 제1항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와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업체), 동법 제6조의2 제3항 경력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또는 종전 규정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건설관련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는 제외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 국가기술자격취소 또는 정지처분(「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8조제1항 제8호 관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2항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건설기술자와 동법 제6조의2에 의한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체 소속 건설기술자에 한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제3항 교육훈련경비를 부담하지 않는 사용자(업체), 동법 제6조의2 제3항 경력확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또는 종전 규정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건설관련업체에 대한 과태료부과 업무(「건설산업기본법」의 일반 및 전문건설업자에 한한다)

□ 처분대상

-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 사전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에 관한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처분권자에게 송부하는 업체와 건설기술자 중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
- 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법인 또는 관할세무서

에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업체

소속직원은 제외한다)에 위해를 끼치지 아니한 때 :
1/6 경감

2. 행정처분의 경감 또는 가중 기준

□ 경감 또는 가중의 적용

○ 처분권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8, 제63조제4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의4 제2항, 제12조의4 제2항 및 제4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자, 감리전문회사 및 감리원 등에 대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부과 처분 중 1/2 범위안에서 경감 또는 가중을 다음 기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권자가 인정하는 다른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업무정지

○ 경감기준 (건설기술경력증을 대여한 자는 제외)

가. 처분횟수

-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1/6 경감

나. 위반동기 및 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거나 보완 완료한 경우 또는 당해 위반행위 외의 다른 위반행위가 없고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 1/6 경감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위반행위를 한 당사자와

○ 가중기준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 제외)

가. 처분횟수

-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1/6 가중

나. 위반동기 및 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일에 의한 때 또는 위반행위가 2건 이상이거나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 1/6 가중

다. 위반내용

-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 1/6 가중

※ 감리원 및 감리전문회사의 경우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4조의8 또는 제40조의2 규정을 적용

□ 과태료

○ 경감기준

가. 처분횟수

-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 : 1/4 경감

나. 위반동기 및 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단순한 경과실로 인한 때 또는 동일

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2건 이하인 때 : 1/4 경감

○ 가중기준

가. 처분횟수

- 과태료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유로 인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 1/4 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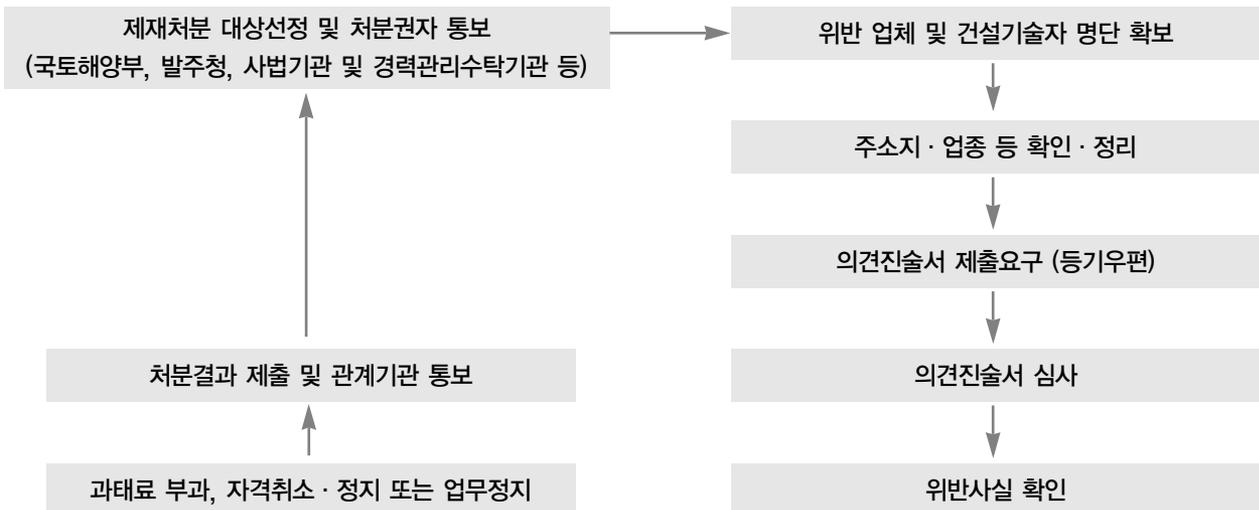
나. 위반동기 및 건수

- 당해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때 또는 동일한 유형의 위반건수가 3건 이상인 때 : 1/4 가중

□ 다른 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에의 적용

○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주무부장관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행정처분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상기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3. 제재절차도



4. 조치요령

□ 제재처분 대상선정 및 처분권자 통보

○ 경력관리수탁기관, 발주청 또는 사법기관 등은 사전 조사과정을 거쳐 관련법령 위반자를 선정하여 처분권자에게 제재요청

※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위반자가 확인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제재요청

○ 경력 거짓신고에 따른 조치사항

- 경력관리수탁기관은 법원의 확정판결, 문서위조(학력·자격 등), 사법기관의 통보, 관계기관 확인 또는 본인 진술 등 신고경력이 거짓일 경우 사전조사과정을 거쳐 해당 신고경력을 정정(삭제 포함)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동 사항을 처분권자에게 통보

- 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

는 자가 자격·학력·경력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여 건설기술자가 된 경우(거짓경력을 제외하여 건설기술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동법 제42조의2 및 제44조에 따라 관련자들을 조치(이 경우 위반자는 건설기술자가 아니므로 행정처분 통보는 하지 않는다)

- 처분권자는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거짓신고 건수를 참작하여 행정처분 가중 또는 경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 대상자 선정방법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조회 결과 사망일 이후 경력신고, 경력변경신고 또는 제증명 신청발급업체
-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입·퇴사일에 대한 전산자료 조회결과 경력 신고자료 상이자 또는 퇴사일 이후 증명서 발급 업체
- 보유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일 이전 퇴사신고자를 신청한 업체
- 각 학교별 학력을 조회확인 결과 미졸업자 등 허위신고한 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기술자격증 등록자료와 불일치한 자
- 군복무(현역)중인 자로서 건설업체에 취업 및 업체
- 건설기술자 경력신고 전산자료 조회 결과 교육기한내 교육미이수자
- 기타 관련사항을 위반한 자

○ 처분청 제재요청

- 학력, 자격이 위·변조된 경우
- 위법사실이 확실한 경우(본인인정)
- 건설기술자가 진정서 접수시

- 기타 관련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 처분청 제재요청 유보

- 1999.12.31일 이전에 보고 및 신고된 사항으로 위반행위시점에서 건설관련업체에 소속된 경우 행정처분 유예대상
- 부도, 폐업, 면허반납 및 60일 이내 입·퇴사과정상 이증등록자
- 반송 등 확인불가 사항은 신고 및 제증명발급이 불가하도록 조치하고 추후 신고에 의한 자료확인의 완료시 제증명이 발급 되도록 유보(단, 자료확인시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지속적 제재요청)

○ 주소지 확인

- 처분 대상자의 주소는 경력관리수탁기관이 사전조사과정에서 확인을 완료
- 경력관리수탁기관은 주소지 확인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전산망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의견진술서 제출 요구

- 요구일로부터 14일 이상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구하는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시행
- 기한내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분할 것임을 예고하는 내용을 포함

□ 처분요령

- 한 회사가 수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1건으로 처리
- 의견진술서로 위법사실을 인정하면 위법처리

- 의견진술서로 위법사실을 부인하면 입증자료 검토, 관계기관 조회 등을 통하여 위법여부를 확인·처리
 - 기한내 의견진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법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처분
 - 처분권자의 재량으로 1회에 한하여 7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의견진술서 제출을 독촉하는 공문을 시행할 수 있음
 - 처분권자는 주소지 불명으로 의견진술통지서가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산망 조회(인근 시·군·구청에 협조요청)를 통해 주소지를 확인하여 재차 의견진술서 제출을 요청
 - 업체 주소지 변경 등 타처분청으로의 이관이 필요한 경우는 처분권자 상호간에 이관하고 그 내용을 경력관리수탁기관장에게 통보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에 의한 건설기술자 업무정지 처분시 국가기술자격 처분에 준하여 처리하되 건설기술경력증을 회수하여 경력관리수탁기관으로 송부
- 위법여부 확인 및 통지
- 의견진술서를 심사한 후 위법유형별로 처분내용을 정리하여 내부 결재를 득한 후 위법사실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등기우편으로 고지
- 위법유형별 처분기준
- 종전 규정의 건설기술자 취업 및 퇴직상황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건설관련업체(2005년 7월 1일 이전의 행위에 한한다) : 과태료 100만원
 - 국가기술자격 관련 이중취업자 또는 대여자 : 자격정지 또는 취소
 - 건설기술경력증 관련 이중취업자 또는 대여자 : 업무정지 12월
 - 경력신고 또는 경력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건설기술자 : 업무정지 12월 및 과태료 300만원
 -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수행하게 한 건설기술자 : 업무정지 12월
 - 교육훈련 미이수자 또는 교육훈련 경비 미부담 사용자(업체) : 과태료 50만원
 - 신고경력 확인을 위하여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건설관련업체의 장 : 과태료 300만원
- 강제징수
-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강제징수 조치
- 보고 및 관련기관 통보
- 처분권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모든 처분결과(위반사항 없음 포함)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지체없이 모든 경력관리수탁기관에 통보
 - 사망기술자, 자격대여자 및 이중취업자를 불법 고용한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등록기관에 처분결과를 통보하여 관계법에 의해 조치토록 요청
 - 처분권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60조제4항에 따라 12월 31일 기준으로 처분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집계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국토해양부(기술정책과)에 제출

II.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사무

1. 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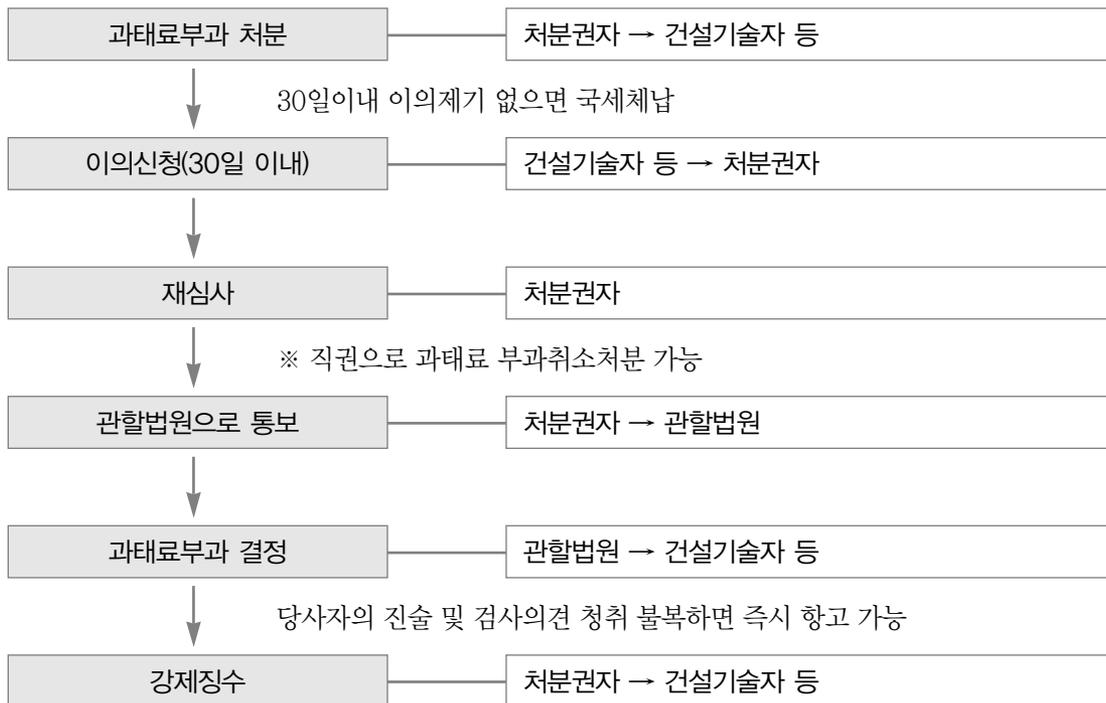
- 「건설기술관리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60조, 제63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내지 제251조

2. 이의신청권자 및 제출기관

-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 건설관련업체 및 그 대리인

※ 제출기관(처분권자) : 지방국토관리청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3. 처리절차



4. 처분권자의 처리요령

- 이의 신청을 제기하지 아니한 자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
- 처분권자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로부터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이의 신청자의 주장과 증거자료, 처분당시의 자료 등을 재심사한 후, 주장의 타당성이 입증되어 과태료부과 처분의 잘못이 인정되면 처분권자가 직권으로 과태료부과 취소 처분하고 이의 신청자에 통보
- 처분권자 재심사결과 이의신청에 내용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과태료부과 처분을 받은 건설기술자나 업체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으로 통보 (이의신청서, 과태료부과 처분 공문 및 증거자료, 의견서 등을 첨부)하고 과태료 처분 취소

※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

-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5. 관할법원의 처리

-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진술 및 검사의 의견을 듣고 과태료부과 결정
- 법원의 결정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청장은 집달관을 통하여 강제 징수
- 이의 신청자는 법원의 결정에 즉시 항고 가능

6. 행정심판과의 관계 등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은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 당한 자가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을 이유로 시정을 구하는 사후적 구제수단으로 재심사하는 기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함
 - 행정심판 : 행정심판이란 행정정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직근상급청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하며 이에 관한 일반법으로 「행정심판법」이 있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이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처분청 자신이 재결청이 되어 당해 행정처분을 재심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 과태료 처분은 원칙적으로 과태료에 처할 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상의 재

판절차에 따라 부과하나 과태료를 관계행정청이 직접 부과·징수하도록 특례규정을 둘 수 있으며

- 상대방은 당해 처분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당해 행정청은 이 사실을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통보해야 하며, 관할지방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를 결정하게 된다.
- 이에 불복하는 자는 즉시 항고할 수 있으며, 법원의 결정이 있으면 검사의 명령으로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강제징수’ 한다.

부 칙 (2005.12.16)

제1조(시행일) 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은 2005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처리지침 사항의 폐지) 제재사무처리지침(기정58814-479, '01.12.3)과 건설기술자 등 제재처분 경감/가중 결정기준(기정58814-454, '03.8.27)은 폐지한다.

제3조(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시행전에 처분받은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2008. 4. 11.)

제1조(시행일) 이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은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한다. ☉